

8-11 초성리 군탄약고 이전사업 추진

사업 이행도	완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폐기	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
			●				5%
사업주체	국방부, 연천군		임기구분	임기내		신규여부	계속

◆ **공약내용:** 초성리 일대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로 지역개발 견인 및 지역주민 숙원 사업 해소

◆ **공약이행 확인지표:** 국방부 예산확보, 사업 착공

1 사업개요

○ 사업내용

- ▶ 사업명: 초성리「562ASP」이전 사업
- ▶ 위치: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
- ▶ 사업량: 면적(106,883㎡, 약 32,332평), 건물 28동, 공작물 12식
- ▶ 사업비: 318억원(공사비 270, 보상비 16, 부대비 32)
- ▶ 기대효과: 안전거리 축소(약 52.4%, 2.3km² ⇒ 1.1km²)로 초성리역세권 개발의 효과적 추진 가능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

○ 추진전략

- ▶ 국방예산 반영 또는
- ▶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2항 “기부 대 양여”관련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인 업무 소통 및 건의

2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

○ (계획) 국방부 예산반영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개정 건의

○ (실적)

- ① 2018년 국방부 예산 1억원 지질조사용역 실시
- ②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개정안 상임위(국방위원회‘19.7.8)제출

구분	총계 (백만원)	기투자	입기내					입기후
			소계	2018	2019	2020	2021	
총계			100	100				
국비			100	100				
도비								
군비								
기타								

3] 공약달성 확인지표

(단위: 건)

지표명	구분	이행률	2018	2019	2020	2021	2022
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율	계획①	100		5	55	100	
	실적②	5		5			
	달성률②:①	5%		100%			
국방부 예산확보	계획①	100	5		55	100	
	실적②	5	5				
	달성률②:①	5%	100%				

4]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○ 2014년도

- ▶ 2014. 4.29 : 562탄약고 시설 이전 합의각서(기부대양여) 체결(국방부⇔연천군)
- ▶ 2014. 8.12 :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의 의뢰(행정안전부)
- ▶ 2014.10.29. :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의결과 “재검토” 통보

○ 2017. 4월: 2017년 전반기 관·군 협력협의회 안건 상정

○ 2018. 8월: 국방부 탄약관리과 지질조사 추진

- ▶ 지질조사 관련 산지일시 사용 신고 수리(2018. 12. 10)

○ 2019년도

- ▶ 2019. 4월: 국방부 사업관계자 지질조사 결과회의
 - 지질조사 결과 지하화 적합, 양여 재산 확대 법령상 어려움.
- ▶ 2019. 5월: 지역구 국회의원에 사업추진방안 마련 회의.
 - 국방예산 우선 반영 또는 관련 법령 개정 건의.
- ▶ 2019.7.8: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2항 개정안
상임위(국방위원회) 제출⇒20대 국회 종료로 개정안 자동폐기

○ 2020년도

- ▶ 2020. 6.24.: 21대 국회에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제12조 제2항
개정안 상임위(국방위원회) 제출

5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

6 문제점 및 대책

- 2014년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“재검토”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
 - ▶ 국방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.
 - ▶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제12조 제2항 “기부 및 양여” 사업 관련 법령 개정 추진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(현행)	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(개정검토안)	비 고
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.	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하여 양여할 수 있다.	

※ 국회 상임위원회(국방위원회)제출 개정법안

7 중앙부처·경기도 동향

- 국방부에서는 인근 군부대 유휴부지를 양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맞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요구됨.